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건축과-24461 |
| 결재일자 | 2014. 11. 21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방침번호 | |

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주무관 | 주택사업팀장 | 건축과장 | 도시관리국장 | | |
| 김일법 | 온일근 | 이성호 | 전결 11/21 윤호중 | | |
| 협 조 | ★건축기획팀장 | 김관원 | | | |
| | 부설주차장팀장 | 이종태 | | | |
| | 건축지도팀장 | 김춘식 | | | |
| | 건축시설팀장 | 이명호 | 도로명주소팀장 | 권영학 | |

- 구민중심의 더불어 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-
특정건축물양성화 T/F
운영계획

2014. 11.



성 동 구
 (건 축 과)

- 구민중심의 더불어 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-
특정건축물양성화 T/F 운영계획

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기간이 2014년 12월 16일에 만료됨에 따른 양성화 신고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,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간접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재산권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방향

□ 추진근거

○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4조(신고)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1930호, 2013.7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부 1년간 효력을 가진다.

○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제4조(신고기간)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.

□ 추진방향

-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처리 전담 T/F 운영
- 특정건축물양성화 One-Stop 서비스 제공
- 다수 협의부서 일괄협의 시스템 운영
- 처리기한 및 단계 단축으로 인한 간접비용 절감
- 구민 재산권 향상에 최대한 협조

II 추진 경과

-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: '13. 7. 16.
- ② 특정건축물양성화 안내문 발송: '13. 11. 27.
 - 건축과 : 장기미준공건축물 건축주(91건)
 - 주택과 : 무허가건축물 건축주(130건)
- ③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접수 시작: '14. 1. 17
- ④ 특정건축물양성화 상담실 운영: '14. 2. 10.~4. 4.
 - 매주 월,수,금 15:00~18:00 동주민센터(6개소): 마장,용답,사근,행당1,왕십리2,송정동
- ⑤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: '14. 2. 18 ~
 - 매주 화,목 13:30~17:30 1층 상담실
- ⑤ 특정건축물양성화 야간 상담실 운영: '14. 9. 17.~11.5
 - 주1회(수) 18:00~20:00 4개동 주민센터(마장,금호2.3가동,용답,송정동).

III 특정건축물양성화 처리 현황

신고현황

- 신고건수: 278건

건축심의 현황

- 심의건수: 188건

사용승인 현황

- 사용승인 건수: 103건

향후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 예상 현황

- 300여건(실제 처리가능 일수 : 20일)

IV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민원 조직운영

1 운영 개요

- 전담 직원 운영: 3명
- 인력충원: 현재 업무담당자 조정 배치
- 팀 배 치

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건축기획팀 | 건축지도팀 | 건축시설팀 |
| 1명 | 1명 | 1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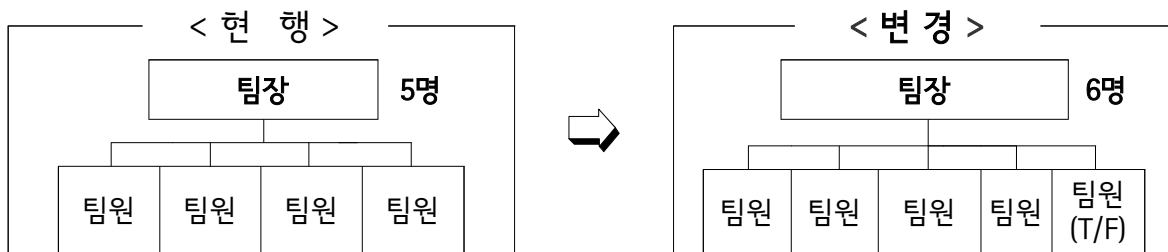
- 시행시기: 2014. 11. 20.
- 시행방법
 - 특정건축물양성화 전담 처리
 - 타 업무 배제

2 처리 사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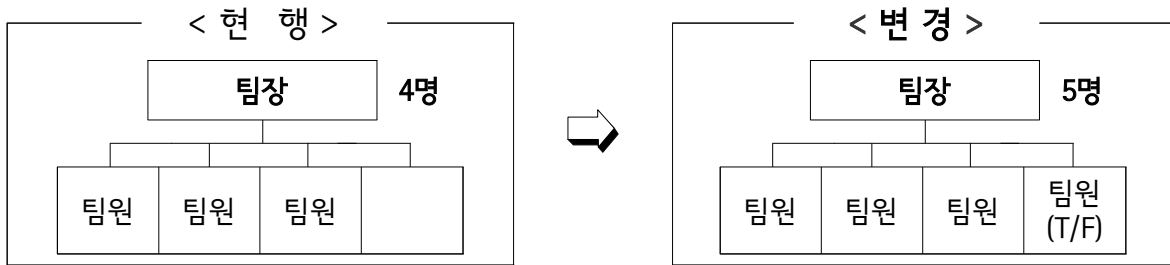
- 업무처리 범위
 -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 접수 및 유관부서 협의
 - 건축심의 상정
 - 이행강제금부과 및 사용승인처리
 - 건축물대장 정리

3 조직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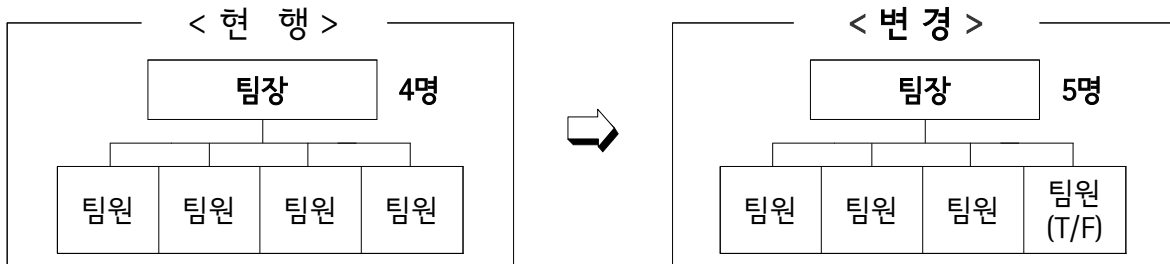
- 건축기획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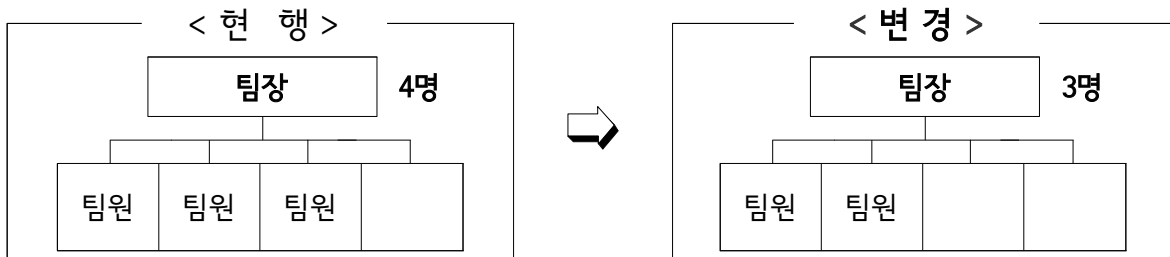
○ 건축지도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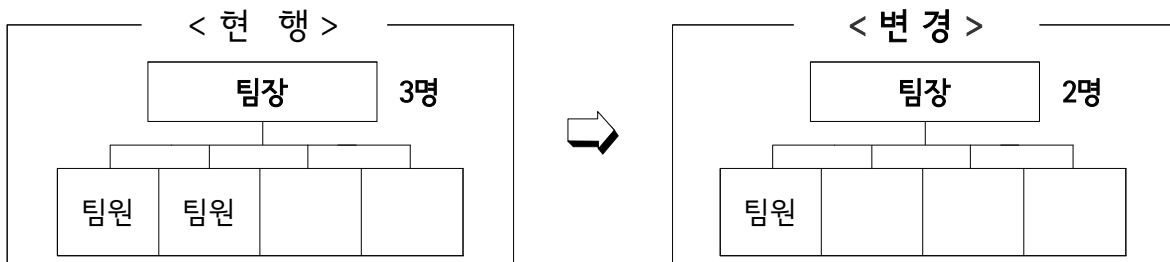
○ 건축시설팀



○ 주택사업팀



○ 부설주차장팀



4 기대 효과

- 특정건축물양성화 One-Stop 민원처리로 정부 시책사업 동참
- 특정건축물양성화 민원을 일괄 접수·처리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및 기간단축으로 인한 간접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재산권 향상에 기여

- T/F팀은 특정건축물양성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, 개별팀은 개별업무에 대한 내실화 추진
- 특정건축물양성화 업무와 개별인허가 업무를 분리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신뢰 회복

V 행정 사항

- 건축물대장 입력 권한 부여
 - 토지관리과

<첨부> 1. 조직신설 전·후 업무처리 비교 1부 끝.

【 조직신설 전 · 후 업무처리 비교 】

○ 특정건축물양성화 업무절차

| 업무절차 | 전담팀 신설 前 | 업무절차 | 전담팀 신설 後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| 처리과 소요기간 | | |
|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접수 | 건축과 0.5일 | 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접수 | 건축과(0.5일) |
| ↓ | | ↓ | |
| 건축법 등 검토 | 건축과 1일 | 건축법 및 관련법검토 | 건축과(0.5일) |
| ↓ | | ↓ | |
| 관련법 등 소관사항 검토의뢰(협조문) | 부서협조 2일 | 관련법 등 소관사항 검토의뢰(협조문) | 부서협조(2일) |
| ↓ | | ↓ | |
| 협조문 회신(취합) | 건축과 2일 | 건축심의 | 건축과(3일) |
| ↓ | | ↓ | |
| 건축심의 | 건축과 3일 | 이행강제금부과 및 사용승인처리 | 허가전담팀(0.5일) |
| ↓ | | ↓ | |
| 이행강제금부과 | 건축과 0.5일 | 건축물대장정리 | 허가전담팀(0.5일) |
| ↓ | | ↓ | |
| 사용승인처리신청 | 건축과 0.5일 | 6개 절차 * + α (1~2일) ⇒ 보완사항 발생시 | |
| ↓ | | | |
|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통보 | 건축과 0.5일 | | |
| ↓ | | | |
| 건축물대장정리 | 토지관리과 1일 | | |
| 9개 절차 * + α (1~2일) ⇒ 보완사항 발생시 | 소요기간 10일+α | | |